

의안번호	2220588
의 퇴 인	노종면 의원
회 답 일	2026.9.23.
추 계 번호	26G4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기술자 및 국내복귀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율 조정 등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기술자 및 국내복귀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감면율을 50%에서 근로제공 기간별로 30~70%로 차등화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8년 35억원 등 2028~2038년까지 11년간 총 578억원(연평균 5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율 차등화(안 제18조제1항)에 따른 세수효과의 경우 현행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된다는 가정하에 추계한 결과로, 실제 적용기한의 연장 여부 및 연장 기간에 따라 추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외국인기술자까지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현행 제도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 없이 2027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부터 근로기간별 차등적인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8	누적	연평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감면율 차등화(안 제18조제1항)	-27	-55	-57	-50	-43	-204	-434	-39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율 차등화(안 제18조의3제1항)	-9	-18	-19	-17	-14	-67	-144	-13
합계	-35	-73	-75	-67	-57	-271	-578	-53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제1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율 차등화 - (현행)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 (개정안)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3년간 70%, 4~7년간 50%, 7~10년간 30% 감면, ○ 적용기한: 2026.12.31.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경우까지 적용	
2	안 제18조의3제1항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율 차등화 - (현행)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 (개정안) 최초 취업일부터 3년간 70%, 4~7년간 50%, 7~10년간 30% 감면, ○ 적용기한: 2028.12.31. 이전 취업한 경우까지 적용	
3	안 제18조의4 (연구인력의 정착 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	○ 연구인력의 정착 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기업이 연구인력을 채용하면서 지급한 이주수당, 주거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 감면	
4	안 제144조의2 (신성장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	○ 중소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세액공제 미공제금액 환급 허용 - 적용대상: 해당 사업연도 및 이월된 미공제금액 - 적용기한: 2029.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8조제1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제도의 적용기한(~2026.12.31.) 이 2년 연장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2	안 제18조의3제1항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 세 감면)	○	
3	안 제18조의4 (연구인력의 정착 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기업 지급하는 이주수당, 주거지원 금의 액수, 해당 기업에 채용된 연 구인력의 소득수준 등에 대한 자료 가 부재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4	안 제144조의2 (신성장기술 또는 국가전 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	×	중소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미 공제금액의 분포와 이월 미공제금 액을 포함한 기업별 과세정보의 결 합 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합 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소득세 징수기준
에 따라 2028년 이후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
- 2027~2028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개정안에 따
른 차등화된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없이 2027.1.1.부터 시행하고, 시행
일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부터 차등화된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규
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내용이 입법화된다고 하더라도 감면율 차등적용 효과
는 작동하지 않게 됨
 - 현행법은 2026.12.31. 이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까지 소득세 감면

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현행 제도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함

- 개정안에 함께 포함된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가 2028년까지 적용되는 점을 고려

□ 개정안에 따른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안 제18조제1항)

(1)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도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제도임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향후 10년간 적용됨

□ 동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은 2025년 139억원, 2026년 142억원(잠정) 등으로 나타남

[표 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세지출 실적: 2022~2026년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p
조세지출 실적	25	40	57	139	142

주: p는 잠정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 방법

□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026년 실적 전망치(142억원)을 연단위로

환산한 후 신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효과로 배분하되, 향후 추계기간 동안 연단위 환산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할 것으로 가정

- 2026년 전망치는 상반기까지의 실적에 진도비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로 잠정 실적치로 볼 수 있음
- 연도별 조세지출 실적은 해당연도 이전부터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이 누적된 금액이므로 이를 8년으로 나눈 연단위 금액으로 환산하여 2027년 이후 근로제공을 시작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효과로 배분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간은 2023.1.1.부터 종전의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으며, 개정법률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도 연장된 감면기간이 적용
 - 이에 2026년 실적에는 2018년 이후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8년으로 나눈 연단위 금액을 사용

□ 연단위 환산액(2026년 기준, 18억원)을 연도별로 배분하면 다음과 같음

- 2027년 이후 매년 국내에서 새롭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 향후 10년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
 - 외국인기술자 개인별 최초 근로 제공 후 재직기간 추정에 어려움이 있어,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인 10년간 연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
- 연단위 환산액은 현행 50% 감면율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을 환산하여 산출한 값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70% 감면율 적용 시기(~3년차)는 환산액에 7/5를 곱한 금액을, 30% 감면율 적용 시기(7~10년차)는 환산액에 3/5을 곱한 수치를 사용

[표 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차등 적용에 따른 감면액 발생

(단위: 억원)

근로제공	감면액 발생 시점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27	27	27	28	21	22	22	23	14	15	15	
2028		27	28	29	22	22	23	24	15	15	16

(3) 추계 결과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감면율을 근로기간별로 차등화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8년 27억원 등 2028~2038년까지 11년간 총 434억원(연평균 3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율 차등화에 따른 세수효과의 경우 현행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된다는 가정하에 추계한 결과로, 실제 적용기한의 연장 여부 및 연장 기간에 따라 추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외국인기술자까지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현행 제도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 없이 2027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부터 근로기간별 차등적인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감면율 차등화 (안 제18조제1항)	-27	-55	-57	-50	-43	-44	
	2034	2035	2036	2037	2038	누적	연평균
	-46	-38	-29	-30	-16	-434	-39

나.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안 제18조의3제1항)

(1)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대한민국 국적의 우수 인력이 해외에서 귀국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제도임
-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 취업한 자에 대해 취업한 날부터 향후 10년간 적용됨

- 동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은 2025년 89억원, 2026년 47억원(잠정) 등으로 나타남

[표 5]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세지출 실적: 2022~2026년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p
조세지출 실적	11	15	24	89	47

주: p는 잠정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 방법

-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026년 실적 전망치(47억원)을 연단위로 환산한 후 신규 국내복귀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효과로 배분하되, 향후 추계기간 동안 연단위 환산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할 것으로 가정

- 2026년 전망치는 상반기까지의 실적에 진도비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로 잠정 실적치로 볼 수 있음
- 연도별 조세지출 실적은 해당연도 이전부터 취업한 국내복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이 누적된 금액이므로 이를 8년으로 나눈 연단위 금액으로 환산하여 2027년 이후 취업한 국내복귀 내국인 우수인력에 대한 효과로 배분
 - 국내복귀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간은 2023.1.1.부터 종전의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으며, 개정법률 시행 당시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내국인 우수인력에 대해서도 연장된 감면기간이 적용
 - 이에 2026년 실적에는 2018년 이후 취업한 국내복귀 내국인 우수 인력의 소득세 감면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8년으로 나눈 연단위 금액을 사용

- 연단위 환산액(2026년 기준, 6억원)을 연도별로 배분하면 다음과 같음

- 2027년 이후 매년 새롭게 취업한 국내복귀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하여 향후 10년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
 - 국내복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개인별 취업 후 재직기간 추정에 어려움이 있어, 소

- 특세 감면 적용기간인 10년간 연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
- 연단위 환산액은 현행 50% 감면율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을 환산하여 산출한 값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70% 감면율 적용 시기(~3년차)는 환산액에 7/5를 곱한 금액을, 30% 감면율 적용 시기(7~10년차)는 환산액에 3/5을 곱한 수치를 사용

[표 6] 국내복귀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차등 적용에 따른 감면액 발생
(단위: 억원)

취업시기	감면액 발생 시점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27	9	9	9	7	7	7	8	5	5	5	
2028		9	9	10	7	7	8	8	5	5	5

(3) 추계 결과

- 국내복귀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감면율을 근로기간별로 차등화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8년 9억원 등 2028~2038년까지 11년간 총 144억원(연평균 1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국내복귀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율 차등화 (안 제18조의3제1항)	-9	-18	-19	-17	-14	-15		
	2034	2035	2036	2037	2038	누적	연평균	
	-15	-13	-10	-10	-5	-144	-13	

IV. 부대의견

- 안 제18조제1항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부터 근로기간별 차등적인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까지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향후 취업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근로기간별 차등화된 감면율을 적용하려면 현행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세제분석2과	이유섭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